

태평양전쟁 피해자들

1. 재 사할린 조선인

가. 일본 정부의 징병, 징용으로 사할린에 끌려간 조선인들은 일본의 패전 후 소련이 사할린을 점령하고, 1946년 2월 3일 소련령으로 편입됨으로써 조국으로 귀환할 수 없게됨. 1946년 한인들의 자치조직인 조선인거류민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43,000명의 조선인이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었다.

나. 일본 정부는 1946년 12월 5일부터 1949년 7월 22일 사이에 총 292,590명의 일본인을 귀환시켰으나, 일본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일본인만을 받아들여서 조선인들은 귀환하지 못하였다.

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2년 4월 28일 발효되었으며, 이때부터 조선인들은 일본 국적을 강제로 박탈 당하였다.

그러므로 위 귀환시기인 1946년 부터 1949년 까지는 조선인들은 일본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을 귀환시키지 않았다.

라. 또한 일본 정부는 소련과 국교를 회복한 1956년 일소공동선언에 기하여 1957년부터 1959년 까지 재 사할린 일본인들을 집단 송환하였으나 역시 조선인들은 제외하였다.

마. 1975년 4명의 조선인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사할린 잔류자 귀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재판은 15년 동안 계속되다가 1989년 6월 취하하였다.

바. 1989년부터 한국에 사는 가족이 사할린을 방문하기도 하며, 현재는 영구 귀환도 가능하다.

사. 일본 정부는 사할린 조선인 영주 귀국사업을 위하여 요양소와 주거 건립을 위하여 32억엔을 지출하여 한국 적십자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 중 일부가 한국으로 귀환하였다.

아. 그러나 한국으로 귀환시에도 가족들과 가티 귀환할 수 없어서 가족들이 생이별하는 경우가 많다.

2. 원폭피해자 문제

가. 일본 정부는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 의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법)'을 제정하여 피폭자라고 인정한 사람에게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하여 1년에 한 번 건강진단을 무료로 실시하고 의료비 지불하며, 국적조항이 없어서 재일 한인에게도 적용되었다.

일본 정부는 그 후 1968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피폭자에게 의료특별수당, 건강관리수당, 보험수당, 개호수당 지급하고 있다.

나.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므로 한국에 있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였고, 의료법의 적용도 거부하였다(의료법은 사회보장법이어서 일본에 사는 피폭자에게만 적용하고 한국인이 일본에 찾아 온다고 하여도 의료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1967년 한국원폭피해자보호협회가 창설되었으며, 1995년 4월 25일 현재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은 남자 1,181명, 여자 1,120명으로 총 2,301명입니다.

라. 일본으로 1970년 밀항한 손진두 씨는 일본 사람과 똑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피폭자건강수첩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978년 최고재판소에서 '의료법은 원폭피해라는 특수한 전쟁피해에 대하여 전쟁주체였던 국가가 자기 책임으로 피폭자들을 구제한다는 일면을 갖고 있다. 원고가 피폭 당시에는 일본 국적을 가졌다가 전후에 평화조약 발효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일본국적을 잃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국가 도의상으로도 의료법을 적용하는 것은 수긍된다'는 판결하였다.

위 판결 이후 일본정부는 '거주지를 일본 국외로 옮긴 피폭자에게는 의료법도 특별조치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후생성 국자의 통달을 발하였다.

마. 일본 정부는 1979년 6월 한국내 원폭피해자에 대한 의료원호를 처음

으로 실시하였으며, 한국의 사회복지부와 일본의 후생성이 1981년 12월 '제한 피폭자 도일치료 실시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1981년부터 1986년까지 349명이 도일하여 치료를 받았다.

바. 일본 정부는 1989년과 1990년에 4,200만엔씩을 진료비로 지원하여, 1989년 11월부터 1991년 11월까지 연인원 16,374명이 치료를 받았다.

사. 일본 정부는 1991년 11월에 17억엔, 1993년 2월에 23억엔등 40억엔의 기금을 만들어 이를 대한적십자사에게 위임하였는데 이는 피폭자들이 요구하는 보상이 아니라 순수한 인도적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기금의 사용에 엄격한 제한(의료비 지급, 건강진단, 장제비 지급, 진료보조비 지급, 피폭자센터건립)을 두었다.

아. 일본 정부는 1994년 12월 9일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의료법과 특별조치법을 통합하였으나 이 역시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3. 시베리아 강제 수용자 문제

가. 일본군의 항복으로 소련군에 의하여 전쟁포로가 되어 시베리아 등지로 끌려 간 관동군이 약 600,000명이 되며 이 중에는 조선인이 약 3,500명 포함되어 있었다.

나. 이들은 약 3년간 강제노동을 하다가 1948년경 한국으로 2,300명이 귀환(남한 500명, 북한 800명, 만주지방 1,000명)하였으며, 현재 한국에는 생존자 60여명이 1990년 '시베리아 싯풍회'를 구성하였고 현재는 약 40여명이 회원이 이다.

다. 이들은 적성국가인 소련에 장기간 억류되었다가 북한을 거쳐서 월남하였다는 이유로 1949년 4월경에 자신들의 집에 돌아 갈 수 있었으며, 그 후 약 40여년간의 동서냉전 하에서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으며 생활하였다.

라. 이들은 1993년 11월 18일 일본 정부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국적조항 등을 이유로 거부 당하였다.

마. 이들은 또한 소련에서의 강제 노동에 대한 미불 임금이 개인당 4,378 루블이 되나 이를 받지 못하고 귀환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바. 이들의 문제는 1945년 8월 15일 이전, 이후에 발생한 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사. 삭풍회는 현재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러시아 정부에 대하여도 미불임금 등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아. 일본의 경우 일본인 귀환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 보상을 하였다.

4. 재일 한국인 문제

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평화조약에 서명한 일본은 1952년 4월 28일 위 조약이 발효되기 9일 전인 1952년 4월 19일 '평화조약에 따른 조선인, 대만인 등에 관한 국적 및 호적사무처리에 관하여'라는 민사감 통달 제438호를 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1) 조선 및 대만은 조약 발효일로부터 일본국 영토에서 분리되므로 이에 따라 조선인 및 대만인은 내지(일본)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하여 모두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

(2) 또한 조선인, 대만인이었던 자라도 조약의 발효 이전에 내지인과의 결혼, 결혼의 신분행위에 의하여 내지호적에 입적할 사유가 생긴 자는 내지인이며, 조약 발효후에는 어떠한 절차도 필요 없이 계속 일본 국적을 보유한다.

이 통달에 의하여 일본에 있었던 조선인들은 하루아침에 일본 국적을 박탈 당하였으며, 외국인에 관한 각종 법적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다.

과거 식민지 독립에 있어서 구영유국에 거주하는 식민지 출신자의 국적이 일방적으로 부인된 사례는 없었는데도 일본은 실민지출신자의 국적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각종 원호법에 국적조항을 설치하여(유족원호법 부칙 제2항

은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당분간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일본국적을 상실한 재일 한국인에 대한 원호를 거부하고 있다.

나. 군인, 군속으로 끌려갔다가 부상 당한 재일 한국인들은 양국 정부 어느 쪽으로부터도 보상을 못받았다. 일본 정부는 원호법의 국적 조항에 기하여 재일 한국인에 대하여는 보상 하지 않고 있다.

다. 한국 정부는 청구권협정에서 재일 한국인의 청구권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인식하는 반면에,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기하여 재일 한국인의 청구권도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라. 한국 정부는 민간청구권과 관련된 법을 제정할 때 재일 한국인은 보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였다.

마. 재일 한국인 피해자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하였다.

바. 재일 한국인들은 이와 같이 양국 정부가 청구권협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청구권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정부에게 이 문제에 관하여 일본 정부에게 중재 요청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외교적 교섭을 통하여 해결할 것이나 중재 요청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 양국의 쟁점은 청구권협정 제2조 제2항 A호의 '일방 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협정 서명일 사이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은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의 해석 문제에 귀결된다.

아. 이에 석성기 씨 등은 1998년 6월 22일 헌법재판소에 한국 정부가 중재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은 위헌이라고 하여 헌법 소원을 한 바 있으며 곧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

자. 일본 정부는 1987년 9월 29일 '대만주민인 전몰자의 유족 등에 대한 조위금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만인 출신 일본병사의 유족, 중상자에게 조

위금, 위로금으로 200만엔 씩을 지불하였다. 식민지국이었던 대만과는 국교를 수립하지 못하여서 식민지 문제 청산이 되지 않고 있었다.

북한과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으며, 북,일 수교시 식민지 시대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차. 일본 정부는 최근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조선인, 대만인 전쟁 피해자를 위하여 특별 입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카. B, C급 전범 문제

조선인 중 B, C급 전범으로 처벌 받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재판에서 '한국인 전범의 피해는 국민이 똑같이 받아야 할 피해'라는 이유로 기각됨. 그러나 원호법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국적조항으로 제외시켰다.